# 울주군 해양레포츠센터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

의 안 265 번 호

제출연월일: 2024. 1. 11. 제 출 자: 울주군수

## 1. 제안이유

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울주군 해양레포츠센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 기 위해 해당 센터의 위탁에 대한 울주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# 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: 울주군 해양레포츠센터 운영
- 나. 추진 근거 및 필요성
  - 1) 추진 근거
    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7조 및 시행령 제19조·제19조의2·제19조의3
    - 「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」 제4조
    - 「울주군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제6조
  - 2) 필요성
    -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및 예산 절감
    - 경험 및 기술의 축적으로 발전 가능성 제고
    -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용이
    - 전문화된 시스템 및 인력으로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
- 다. 위탁사무내용: 울주군 해양레포츠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업무 전반 라. 위탁시설 개요
  - 1) 위 치: 서생면 해맞이로 1560 일원
  - 2) 규 모: 부지면적 35,200m²/연면적 2,525.51m²/건축면적 1,884.34m²

# 3) 주요시설: 해양레포츠센터, 편익시설, 관리동, 캠핑장(66면), 주차장(110대) 등

동 별	층 별	면적(m²)	주 요 시 설
합계		2,525.51	
해양레포츠 센터	소계	2,204.22	
	지상1층	173,48	기계실, 전기실, 발전기실
		756.49	정고, 운영사무실, 카페테리아, 다목적실, 샤워실 등
	지상2층	984.50	숙소, 강의실, 휴게공간, 복도, 홀, 화장실, 린넨실 등
	지상3층	289.75	세미나실, 화장실, 복도, 홀, 창고, 계단실 등
편익시설	지상1층	277.75	샤워실, 화장실, 취사장, 야외지원센터, 온수실 등
관리시설	지상1층	43.54	관리실, 숙직실, 화장실
캠핑장	66면		프리텐트 50면, 오토캠핑 16면

마. 위탁기간: 2024. 4. 10. ~ 2027. 4. 9.(3년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: 공개모집

사.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: 적정

아. 위탁예산: 수탁자 비용 부담

# 3. 향후계획

가. 위탁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: 2024. 2.

나. 사무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: 2024. 2. 29.한

다. 위·수탁 협약 체결 : 2024. 3.

# 4. 참고자료

가. 위탁 적정성 검토 사항 : 붙임 1

나. 관계법령 : 붙임 2

### 붙임1 시위탁 적정성 검토 사항

- □ 위탁 적정성 검토 사항(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5조)
- 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: 해양레포츠와 관련된 민간의 전문지 식과 다양한 경험이 많은 전문기관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사업의 효율성 확보 및 유영 활성화
- 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: 위·수탁 업무협약 체결, 수탁자 책임성 확보, 지속 적인 지도 감독 강화 및 처리 상황 점검 들을 통한 공공성과 안정성 유 지
- 3. 경제적 효율성: 민간 전문인력 활용으로 행정조직 확대 방지 및 사업의 신속 추진 가능
- 4. 수탁자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: 수탁자의 경험 및 전문성을 활 용하여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의 양적·질적 개선 등 해양레포 츠센터 운영 활성화
- 5. 성과 측정의 용이성: 사업 수혜 인원, 사업 참여 인원 및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계 량적 성과 측정 용이
- 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: 수탁기관 지휘·감독을 통한 관리 및 운영 투명성 강화
- 7.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: 해당 사업은 해양 안전교육 및 해양스포츠 활성 화를 위한 체험교실 운영 등이므로 민간의 서비스와 중복되지 않음
  - ⇒ 사업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

#### 붙임2 관계 법령

### □ 관계 법령

### ❖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####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 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"관리위탁"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 적·성질·규모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

#### ❖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#### 제19조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)

-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 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.
-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#### 제19조의2(입찰의 성립 및 참가자격)

- ①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과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제한입찰 및 지명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 인 이상 입찰하여야 성립한다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과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제한입찰 및 지명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한다.
- 1.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 허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
- 2. 수탁받는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「소득세법」제168조, 「법인세법」제111조 또는 「부가가치세법」제8조에 따 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을 것

#### 제19조의3(입찰참가자 자격 제한에 의할 계약)

-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관리위탁에 따른 위탁료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경우
- 2. 위탁하는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수한 기술 또는 관리능력이 요구되는 계약의 경우
- 3.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위탁 계약 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.
- 1. 제1항제1호의 경우: 관리능력 또는 관리실적
- 2. 제1항제2호의 경우: 해당 관리위탁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 상황 또는 그 관리위탁과 같은 종류의 수탁 실적
- 3. 제1항제3호의 경우: 입찰 참가자의 재무상태

### ❖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4조(대상사무)

- ①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 -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  -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  - 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의 단순 행정사무

- ② 제1항제4호의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 운영 및 관련 업무로 한다
  - 1. 복지・보건・건강・의료 시설
  - 2. 문화관광체육공원 시설
  - 3. 교육공예, 공동체 관련 시설
  - 4. 환경, 교통 관련 시설
  - 5. 근로자복지, 취억지원 직업훈련 관련 시설

#### 제9조(수탁자 선정)

- 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, 군수는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 개하여야 한다.
- ② 군수는 수탁자를 모집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,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.
- ③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 위탁사무명, 수탁자의 명칭, 위탁기간 등의 사항을 포함한 수탁자 선정 내용을 군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.

#### 제10조(사무위탁심의위원회)

- ① 군수는 위탁사무 선정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위탁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두며, 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,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.
  - 1. 수탁자의 선정(재계약 포함)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
  - 2. 수탁자 소속 근로자의 고용・근로조건에 관한 사항
-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탁사무 소관부서별로 해당 안건심의에 한정하여 구성 ㆍ운영한다.

#### 제11조(위원회 구성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③ 위원은 제4항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-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,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2명 이하 로 하며, 노무 관련 외부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한다.
  - 1.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
  - 2. 울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
  - 3. 변호사・공인회계사・기술사・건축사・세무사・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
  - 4.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에서 추천한 사람
  - 5.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
  - 6.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·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#### ❖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양레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

#### 제6조(관리위탁)

- ① 군수는 레포츠센터의 전문적 관리·운영과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설의 활성 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4조에 따른 사업과 제5조에 따른 운영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-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관리·운영 현황을 평가할 수 있다.
-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④ 군수는 수탁자의 계약 갱신 신청에 따라 「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관리위탁 계약을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 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계약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.